

2017년말 기준 대외차입 및 증권발행 현황 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- ▶ 조사대상 업체들의 대외 차입 및 증권발행 현황을 파악하여 매분기 공표되고 있는 국제투자대조표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

2. 조사대상

- ▶ 2016년말 기준으로 대외 차입 및 증권발행 잔액이 있는 기업과 2017년중 신규 대외차입 또는 증권발행 실적이 있는 기업

3. 조사내용

- ▶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증권발행을 통하여 발생한 채무 내역

* 보고단위: 해당통화(1단위 해당통화) (예) 200천유로(X) → 200,000유로(O)

- 차입 :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14조 및 제7-15조에 의거 국내 거주자가 외국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외화표시 또는 원화표시 차입금

* 현지금융, 금융리스, 수출선수금, 수입미지급금 제외

- 증권발행 :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14조 및 제7-22조에 의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

4. 작성 및 제출

- ▶ 한국은행 홈페이지(www.bok.or.kr) > 조사·연구자료 > 조사표 > 국외투자통계 > “2017년말 기준 대외차입 및 증권발행 현황 조사”를 다운로드하여 작성
- ▶ 작성된 조사표는 반드시 담당자 직·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E-mail로 송부(E-mail 송부가 어려울 경우 팩스 및 우편 이용)
 - ※ 조사표 작성자 앞으로 추후 소정의 기념품 발송 예정
- ▷ E-mail 주소 : bokiip@bok.or.kr
- ▷ 팩스: 02) 759-4288
- ▷ 주소 : (04531)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경제통계국
국외투자통계팀 국제투자대조표 담당자
- ▶ 제출 기한 : 2017년 3월 23일(금)까지
- ▶ 작성 문의 :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 (☎ 02)759-4690)

<법적 근거>

- ▶ 조사표 징구 :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, 「통계법」 제26조 제1항 및 제2항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0-3조 제1항
- ▶ 비밀보장 : 「통계법」 제33조 및 제34조,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
 - ※ 관련 법규의 상세내용은 (별첨) 참조

(별 첨)

▶ **조사표 징구의 법적 근거** :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, 「통계법」 제26조 제1항 및 제2항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10-3조 제1항

<한국은행법>

제86조(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 등)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와 은행업무·재정·물가·임금·생산·국제수지 기타 경제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·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<통계법>

제26조(실지조사)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
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<외국환거래규정>

제10-3조(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) ①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,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, 환전영업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경우
2. 국제수지, 국제투자대조표(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포함한다) 및 외국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
3. 기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▶ **비밀보장의 법적 근거** : 「통계법」 제33조 및 제34조,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

<통계법>

제33조(비밀의 보호)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(통계종사자 등의 의무)

통계종사자,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외국환거래법>

제22조(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) 이 법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·보고·통보·중개(仲介)·중계(中繼)·집중(集中)·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